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 -
	주민등록번호		휴 대 전 화	
	주 소	(우 -)		
소 속 사 회	회 사 명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명			
	업 종			
	매 출 액	백만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우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단지명)	공급유형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본인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일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지방중소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